#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29

발의연월일: 2024. 6. 24.

발 의 자: 박덕흠 • 구자근 • 엄태영

이헌승 • 고동진 • 박성민

정희용 · 강승규 · 김승수

강민국 · 장동혁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을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해당 기준을 초과한 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재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은 1999년에 수립된 것으로서 그동안의 물가상승률과 사업규모의 확대 등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역 균형발전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의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해당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을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상향 조정하되, 중 앙관서의 장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한 경우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 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해당기준을 초과한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상향된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제38조).

또한 예비타당성 기준 상향에 따른 국가 재정의 과도한 지출과 채무 증가를 막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미래대비 재정 여력을 비축하고자 함(안 제86조의2 및 제86조의3).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을 "다음"으로, "대규모사업"을 "대규모 신규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사업"을 "사업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사업"으로 한다.

- 1.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 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호에 따른 철도
  - 다.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 라.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 마.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 바.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호에 따른 댐
- 사.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
- 아. 「하천법」 제2조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하천시설
- 자.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도로·철도·도시철도·항만시설· 공항시설·댐·수도·하천시설 및 관련 시설로 인정하는 사업
- 2.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사업
- 3.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나.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 제86조의2 및 제8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86조의2(관리재정수지의 허용한도) ① 정부는 제32조 또는 제89조에 따라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 통합재정수지에서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재정수지를 제외한 재정수지(이하 "관리재정수지"라 한다)의 적자 규모가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해당 회계연도 국내총생산액의 100분의 3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1. 고용보험기금

- 2. 국민연금기금
- 3.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 4.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② 정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전 회계연도의 결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채무의 합이 직전 회계연도 국내총생산액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였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관 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액의 100분의 2 이내로 예산 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 1. 제91조의 국가채무
- 2. 다음 각 목의 지방채무. 다만, 국가의 회계나 기금으로 인수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무는 제외한다.
  - 가. 「지방재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방채
  - 나. 「지방재정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 중 지 방자치단체의 이행 책임이 확정된 금전채무
  - 다. 「지방재정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에 따른 채무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5년마다 본 조의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의 적 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
- 제86조의3(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 적용의 예외) ① 정부는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때에 제8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제86조의2에 따

- 른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2조 또는 제89조에 따라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86조의2에 따른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정수입 증대 방안, 지출효율화 방안 등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정건전화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에게 자료제출 및 관련 추진방안의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타당성재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닌 사업으로서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제50조제2항제1호에 따라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	<u>다음</u>
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	<u>대규모 신</u>
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	규사업
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대규모</u>	
<u>사업</u> 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u>&lt;단서 삭제&gt;</u>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u>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u>	
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	
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	
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	
<u>으로 한다.</u>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1.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
	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
	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포
	함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u>업</u>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 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 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 다. 「도시철도법」 제2조제2 호에 따른 도시철도
- 라.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 마. 「공항시설법」 제2조제7 호에 따른 공항시설
- 바. 「댐건설・관리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
- 사.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
- 아. 「하천법」 제2조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하천 시설
- 자.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 이 도로・철도・도시철도 • 항만시설 • 공항시설 • 댐 ·수도·하천시설 및 관련 시설로 인정하는 사업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 2.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사업

3.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 4. -----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 소기업 분야의 사업

② ~ ⑥ (생 략) <신 설>

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으 로서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 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 3.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 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 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서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업
  - 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 정보화 사업
  - 나.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 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 업

----사업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 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사업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86조의2(관리재정수지의 허용한 도) ① 정부는 제32조 또는 제89

조에 따라 예산안 또는 추가경 정예산안을 편성할 때 통합재정 수지에서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재정수지를 제외한 재정수지(이 하 "관리재정수지"라 한다)의 적자 규모가 예산안 또는 추가 경정예산안의 해당 회계연도 국 내총생산액의 100분의 3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1. 고용보험기금
- 2. 국민연금기금
- 3.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 4.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② 정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전 회계연도의 결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채무의 합이 직전
  회계연도 국내총생산액의 100분
  의 60을 초과하였거나 다음 회
  계연도에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
  는 때에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액의 100분의
  2 이내로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 <u>1. 제91조의 국가채무</u>
- 2. 다음 각 목의 지방채무. 다만, 국가의 회계나 기금으로 인수

<신 설>

<u>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u> 무는 제외한다.

<u>가. 「지방재정법」 제11조제</u> 1항에 따른 지방채

나. 「지방재정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 중 지방자치단체의이행 책임이 확정된 금전채무

다. 「지방재정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에 따른 채무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5년마다 본 조의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 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

제86조의3(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 적용의 예외) ① 정부는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 는 때에 제8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제86조 의2에 따른 관리재정수지 허용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 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관리재 정수지 허용한도를 적용하지 아

니하고 제32조 또는 제89조에 따라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 안을 편성하여 제86조의2에 따른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정수입 증대 방안, 지출효율화 방안 등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하여 국가재정은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정건전화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에게 자료제출 및 관련 추진방안의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